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6209   |
| 의 퇴 인 | 안상훈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6.2.5. |
| 추계번호  | 25C6971   |

#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조<br>(정의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.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<u>심장혈관질환</u>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<br/>가. 심근경색 등 <u>심장혈관질환</u><br/>다. 뇌졸중,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<br/>라. 심부전(신설)<br/>마. 부정맥(신설)<br/>바. 판막질환(신설)<br/>－ (개정) 기존 ‘심혈관질환’을 ‘심장혈관질환’으로 확대 표기하고 뇌동맥류, 심부전, 부정맥, 판막질환을 명시</li> </ul>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8조<br>(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함(제2항)<br/>3. 심뇌혈관질환 예방·<u>진단</u>·치료·재활을 위한 중개·임상 연구<br/>－ (개정) ‘진단’ 포함</li> <li>○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9조<br>(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과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의 수행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(제1항)</li> <li>○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4조<br>(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3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조<br>(정의)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/li> </ul> |
| 2  | 안 제8조<br>(심뇌혈관질환<br>연구사업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9조<br>(심뇌혈관질환조사<br>통계사업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4조<br>(심뇌혈관질환정보<br>시스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사업 수행 명문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개별 질환명을 법에 명시하고,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범위에 ‘진단’을 포함하며,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사업 범위를 확대·명문화하고자 함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사업은 일부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법제화에 따라 확장될 범위와 그에 따른 추가제정소요를 현시점에 가정하기 어려움
  - (안 제2조) 개정안은 뇌동맥류, 심부전, 부정맥, 판막질환 등의 심뇌혈관질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각 질환명을 명시하였으나, 이는 심장질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현시점에 구체적인 사업 확대 계획을 가정하기 어려움
    - 보건복지부는 「2023~2027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」(2023.7.)에서 이미 심부전, 부정맥 등에 대한 통계 자료 생산, 연구계획 및 심장혈관질환 관리

시스템(안) 등을 포함하고 있음

- (안 제8조) 개정안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범위에 심뇌혈관질환 ‘진단’을 포함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신설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신사업 추진 여부 및 규모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
    - 「2023~2027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」(2023.7.)은 심뇌혈관질환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‘신기술 기반 심뇌혈관질환 세부 질환별 진단·치료 기술 고도화’를 제시하였으며, 심뇌혈관질환 ‘예방-진단-치료-관리’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센터 구축을 계획하는 등 ‘진단’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
  - (안 제8조·제9조) 개정안은 현행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 주체를 법에 명시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이는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    - 보건복지부는 “중증-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”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센터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163억 7,100만원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됨
    - 또한,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(91억 6,300만원), 심뇌혈관질환 통계 생산(4억 6,400만원) 사업을 기수행 중이며, 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
    - 위와 같이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심뇌혈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존 응급의료기금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기존 지출의 재분배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### Ⅲ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임슬기 | 이진우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임슬기 | 02-6788-4740 | sg.lim@assembly.go.kr |